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후보추천위 및 위원장 탄핵소추 등〉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03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4
2. 위원장 탄핵소추 근거 신설	12
3. 후임 임명까지 직무 수행 근거 폐지	18
4. 부 칙	21
※ 참고자료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남근 · 김문수 · 문금주 · 문대림 · 이광희 · 이기현
이재관 · 이훈기 · 임미애 · 전진숙 · 전현희 · 진성준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6. 2. 2.

3. 회 부 일 : 2026. 2. 3.

※ 의안번호 : 165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관련하여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는’ 권고를 한 바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는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5년 11월 특별 심사에서도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

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선출·지명기관에 설치하고, 국회·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신설).

[표-1]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설치	선출·지명기관에 설치
기능	위원후보자 추천
구성시기	위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위원 수	10명(위원장 1명 포함, 호선)
위원	○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 기관이 추천하는 6명 (국회 선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3명, 그 외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추천 3명)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소집요건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요청 ○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족수	재적 과반수 찬성
추천 후보자	3배수 이상
후보자 공개	추천 명단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자료제공 요청	후보자 소속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 요청
존속기한	위원후보자 추천 시 해산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 ----- ----- -----이 경우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균형있게 선출·지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신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위각 선출·지명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출·지명기관은 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출·지명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현행	개정안
	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선출·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

현행	개정안
	다. ⑧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지명¹⁾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²⁾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의 국가 인권기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2)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1: 독립성 보장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80

등을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또한,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7명 또는 9명의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음.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위원장)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3~5명의 위원(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지명해 왔음.³⁾

[표-3]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⁴⁾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최영애 (위원장)	2018. 6. 15.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송두환 (위원장)	2021. 6. 13.	9명	대통령 추천 4,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 4	4명
안창호 (위원장)	2024. 7. 4.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5명
박찬운 (상임위원)	2019. 10. 18.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용원 (상임위원)	2022. 12. 2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오영근 (상임위원)	2025. 12. 17.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문순희 (비상임위원)	2019. 6. 13.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서미화 (비상임위원)	2020. 2. 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종민 (비상임위원)	2022. 9. 2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3)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회의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규나 지침 등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2026. 6. 30. 기준임.

위원명	구성일	후보추천위 구성 내역		추천인원
		인원수	구 성	
이한별 (비상임위원)	2023. 5. 26.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4명
오완호 (비상임위원)	2025. 9. 11.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김민문정 (비상임위원)	2026. 5. 8.	7명	대통령 추천 3, 대한변협 추천 1, 인권위 추천3	3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시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권고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2 참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권자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위원추천위원

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선출·지명기관별로 설치하는 경우, 선출·지명기관과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간 지휘·감독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선출·지명기관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각 선출·지명기관의 장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며 추천 명단을 각 선출·지명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법령의 종류를 선출·지명기관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국회규칙·대통령령·대법원규칙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②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및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표-4]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기관 및 위임법령 현황

후보추천위	설치기관	위임법령 형식	비 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	대법원규칙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법무부	대통령령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제청
특별검사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후보추천위	국회	국회규칙	-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⁵⁾

5)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1	진성준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73	서미화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77	고민정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433	신장식의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16	윤종오의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2. 위원장 탄핵소추 근거 신설

개정안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항 신설).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임.⁶⁾

헌법 제65조⁷⁾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함.⁸⁾

6)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결정

7)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행법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를 살펴보면,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은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는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⁹⁾을 두고 있음.

8)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장)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 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표-6] 헌법 및 개별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 및 근거

구 분	대 상	근 거
헌법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개별 법률 (직접적 근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및 제16조제5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법률 (간접적 근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원¹⁰⁾으로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에서 차지하는 권한 및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10)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당연퇴직 사유)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퇴직 사유)된 경우가 아니면 당연퇴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¹¹⁾받고 있음.

개정안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권한 및 책임이 크며 신분을 두텁게 보장받고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하는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여러 국제기준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 요소로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립성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 운영상 · 재정상 독립적인 지위와 활동이 가능하고 위원의 임명 · 해
임 · 구성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
음.¹²⁾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이래 현재까지 신분을 두텁게 보장받아 온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
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장된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이므로, 국
가인권위원회의 합헌적 · 합법적 직무수행 확보 측면과 독립성 보장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탄핵소추 대상 직위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동등
한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
리 소속이면서도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
기관인 중앙행정기관¹³⁾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
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두
고 있지 아니한 반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두고 있음.

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p.60~61

13)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음.

[표-7] 국가인권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정원	11명	7명	9명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탄핵소추 대상 (개정안)	-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셋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위원장 및 상임위원(또는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⁴⁾

14) 위원장 · 상임위원(위원) 탄핵소추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78	윤종균의원	위원장 · 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추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	강유정의의원	위원장 · 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가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022	김선민의의원	위원장 · 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가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691	박지원의의원	위원장 · 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및 위원 결격사유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가
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396	서미화의의원	위원장 · 위원 탄핵소추 근거 신설

3. 후임 임명까지 직무 수행 근거 폐지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위원에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가 끝나면 퇴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삭제).

[표-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8항¹⁵⁾은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등 위원에 임기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

임기만료 위원에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위원에 임기만료 후 직무가 연장될 수 있는 최대 기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간 업무 수행이 계속될 수 있고, 장기간 업무 수행이 계속된다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1항¹⁶⁾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음.¹⁷⁾

실제로, 2024. 10. 14. 3년의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하여 2026. 6. 30. 현재 20개월 가까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9] 위원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사례

직 위	성 명	당초 임기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기간
비상임위원	한○○	21. 10. 15. ~ 24. 10. 14.(3년)	24. 10. 15. ~ 26. 6. 30. 현재(20개월)

이에 개정안은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게 위원 임기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2항¹⁸⁾은 위원 중 결원¹⁹⁾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74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19) ‘결원’은 ‘임기만료’와 구분되는 개념임. 위원이 임기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면직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이유로 당연퇴직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등이 결원에 해당함(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80).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⁰⁾ 임기만료의 경우에 대한 후임자 임명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 위원 공석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의 경우에 대한 후임자 임명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²¹⁾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6조²²⁾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 다만,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81).

21) 훈시규정으로서 실질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후임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선언적 효과는 있을 수 있음.

22)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부 칙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이 법 시행 당시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음.

[표-10]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먼저,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모든 조항이 ‘공포한 날’에 같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의2제10항의 경우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²³⁾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조항(안 제5조의2)의 시

2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행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중인 위원은 후임자 임명 전이라도 퇴직되도록 하였음.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중인 위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3년을 채우고 후임자의 임명 여부와 결부되어 예외적으로 불확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임기만료 후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아니면 이 법 시행 이후 임기만료 후 재직하는 위원부터 적용할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참고 1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국내외 참고사례

□ 해외 인권기구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지역	국가	정치체제	후보선출위원회 설치
미주	멕시코	대통령제	국회
	아르헨티나	대통령제	국회
아시아태평양	네팔	내각제	헌법이사회
	말레이시아	내각제	총리실 · 국가인권위 공동
	인도	내각제	총리 · 의회 공동
	인도네시아	대통령제	국가인권위
	필리핀	대통령제	국가인권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각제	국회
	케냐	대통령제	대통령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국내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현황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10명)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제1항)	○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9명)	법무부 (검찰청법 제34조의2제1항)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각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기관 (법적근거)	위원 구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국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다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원으로 위촉

권고: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재승인을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승인소위는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 및 이번 등급심사 기간 중 승인소위가 제시한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일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인권기구와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 참고 사항:

1.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그 중 2명은 상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그 중 1명은 상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인권위원을 임명한다.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식(인권위원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그러나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은 3개의 선출·지명기관에 의해 적용되는 일관되고 공식화된 단일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는 정당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지침에 단일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절차를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절히 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고위직에 대한 독립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체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견해 1.8을 참고한다.

2. 재정 자율성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고, 채용, 예산 및 회계를 포함한 특정 관행들을 규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국가가 국가기관들이 공적 자금(예산)의 사용에 대해 적절히 책임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균일한 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한 경우,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국가인권기구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독립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인정하
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
력을 할 것을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2와 국가인권기구의 행정규정에 관한 승인소위의 일반
견해 2.7을 참조한다.

참고 3 위원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현황

직 위 (직 급)	성 명	당초 임기	직무 수행 기간	후임 성명	후임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장(男) (장관급)	김창국	01.11.25. ~04.11.24.	~04.12.23.	최영도	04.12.24. ~07.12.23.	대통령 지명
위원장(男) (장관급)	현병철	09.7.17. ~12.7.16.	~12.8.12.	현병철 (연임)	12.8.13. ~15.8.12.	대통령 지명
위원장(男) (장관급)	이성호	15.8.13. ~18.8.12.	~18.9.3.	최영애	18.9.4. ~21.9.3.	대통령 지명
위원장(男) (장관급)	송두환	21.9.4. ~24.9.3.	~24.9.5.	안창호	24.9.6. ~27.9.5.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男) (차관급)	박경서	01.11.25. ~04.11.24.	~04.12.23.	정강자	04.12.24. ~07.12.23.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김영혜	10.11.15. ~13.11.14.	~13.11.27.	김영혜 (연임)	13.11.28. ~16.11.27.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최혜리	16.11.28. ~19.11.27.	~20.1.12.	박찬운	20.1.13. ~23.1.12.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男) (차관급)	박찬운	20.1.13. ~23.1.12.	~23.2.5.	김용원	23.2.6. ~26.2.5.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최영애	04.7.23. ~07.7.22.	~07.9.20.	최경숙	07.9.21 ~10.9.20.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최경숙	07.9.21 ~10.9.20.	~10.10.10.	장향숙	10.10.11. ~13.10.10.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장명숙	12.3.8. ~15.3.7.	~15.3.15.	이경숙	15.3.16. ~18.3.15.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이경숙	15.3.16. ~18.3.15.	~18.6.21.	정문자	18.6.22. ~21.6.21.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정문자	18.6.22. ~21.6.21.	~21.8.5.	남규선	21.8.6. ~24.8.5.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남규선	21.8.6. ~24.8.5.	~25.5.19.	이숙진	25.5.20. ~28.5.19.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김호준	04.12.24. ~07.12.23.	~08.2.3.	문경란	08.2.4. ~11.2.3.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홍진표	11.2.21. ~14.2.20.	~14.3.6.	유영하	14.3.7. ~17.3.6.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정상환	16.3.22. ~19.3.21.	~19.9.18.	이상철	19.9.19. ~22.9.18.	국회 선출

직 위 (직 급)	성 명	당초 임기	직무 수행 기간	후임 성명	후임 임기	선출· 지명기관
상임위원(男) (차관급)	이상철	19.9.19. ~22.9.18.	~22.10.20.	이충상	22.10.21. ~25.10.20.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원형은	05.6.1. ~08.5.31.	~08.9.9.	김양원	09.9.10. ~11.9.9.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양원	09.9.10. ~11.9.9.	~11.9.27.	김성영	11.9.28. ~14.9.27.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성영	11.9.28. ~14.9.27.	~14.11.2.	최이우	14.11.3. ~17.11.2.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최이우	14.11.3. ~17.11.2.	~17.12.14.	배복주	17.12.15. ~20.12.14.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서미화	20.5.1. ~23.4.30.	~23.6.29.	이한별	23.6.30. ~26.6.29.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정강자	01.11.25. ~04.11.24.	~04.12.23.	이해학	04.12.24. ~07.12.23.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태식	10.2.8. ~13.2.7.	~13.4.17.	한태식 (연임)	13.4.18. ~16.4.17.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태식	13.4.18. ~16.4.17.	~16.6.15.	장애순	16.6.16. ~19.6.15.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장애순	16.6.16. ~19.6.15.	~19.7.8.	문순희	19.7.9. ~22.7.8.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문순희	19.7.9. ~22.7.8.	~22.11.21.	김종민	22.11.22. ~25.11.21.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만흠	03.8.1. ~06.7.31.	~06.10.24.	윤기원	06.10.25. ~09.10.24.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윤기원	06.10.25. ~09.10.24.	~09.12.28.	장주영	09.12.29. ~12.12.28.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강명득	12.8.13. ~15.8.12.	~16.9.22.	김기중	16.9.23. ~19.9.22.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기중	16.9.23. ~19.9.22.	~20.1.12.	양정숙	20.1.13. ~23.1.12.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석원정	20.7.3. ~23.7.2.	~23.7.23.	원민경	23.7.24. ~26.7.23.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덕현	01.11.25. ~04.11.24.	~05.3.14.	신혜수	05.3.15. ~08.3.14.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신혜수	05.3.15. ~08.3.14.	~08.3.19. (중도사퇴)	최윤희	08.9.4. ~11.9.3.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최윤희	08.9.4. ~11.9.3.	~12.1.2.	곽란주	12.1.3. ~15.1.2.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곽란주	12.1.3. ~15.1.2.	~15.2.4.	이은경	15.2.5. ~18.2.4.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이은경	15.2.5. ~18.2.4.	~18.8.26.	김민호	18.8.27. ~21.8.26.	국회 선출

직 위 (직 급)	성 명	당초 임기	직무 수행 기간	후임 성명	후임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민호	18.8.27. ~21.8.26.	~21.10.14.	한석훈	21.10.15. ~24.10.14.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석훈	21.10.15. ~24.10.14.	~26.6.30. 현재	-	-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오섭	01.11.25. ~04.11.24.	~04.12.23.	나천수	04.12.24. ~07.12.23.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위수	15.8.10. ~18.8.9.	~18.8.26.	임성택	18.8.27. ~21.8.26.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김수정	21.8.27. ~24.8.26.	~24.9.12.	소라미	24.9.13. ~27.9.12.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신동운	01.11.25. ~04.11.24.	~04.12.23.	정인섭	04.12.24. ~07.12.23.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수웅	17.2.1. ~20.1.31.	~20.2.27.	이준일	20.2.28. ~23.2.27.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조미경	01.11.25. ~04.11.24.	~04.12.23.	최금숙	04.12.24. ~07.12.23.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황덕남	07.12.24. ~10.12.23.	~11.1.18.	양현아	11.1.19. ~14.1.18.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이선애	14.1.19. ~17.1.18.	~17.1.31.	이선애 (연임)	17.2.1. ~20.1.31.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조현욱	17.6.21. ~20.6.20.	~20.12.10. (중도사퇴)	윤석희	21.2.19. ~24.2.18.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윤석희	21.2.19. ~24.2.18.	~24.3.14.	강정혜	24.3.15. ~27.3.14.	대법원장 지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 11. 25.) 이후 2026. 6. 30.까지]